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6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에 의거 '20.4월 조성 예정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운영인력	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DDP 내 (2020년 DDP에 설치예정인 'UD 스마트 유니랩'과의 공간 및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실행력 확보)	67㎡	5명	2020.4월 ~ 2023.3월 (3년)

- 위탁기간 : 3년(2020. 4. ~ 2023. 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1,190백만원
 - 사업비 900백만원, 운영비·인건비 290백만원
- ※ '19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준비 시범사업' 추진(600백만원)

(3) 주요 위탁사무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 UD 현황 및 실태조사
 - UD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서울시 주요사업(공공공간, 시설물 등) 사전자문
 - UD 인증제클리닉 및 전시사업
 - UD 도시구현 관련 선도사업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
 - UD 교육 및 홍보 전시
 - UD 국내외 행사 개최 지원
 - UD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효과
 - 기 운영중인 민간조직의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인력 추가채용 및 인건비 별도 확보 등 사업추진상 행정·재정적 부담 절감 가능
-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민간확산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비효율 우려가 있는 직영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2) 예산조치 : 1,190백만원('20년 예산 편성) 필요

(3) 합 의 : 조직담당관 합의 완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18.10.2.
- '20년 예산(안) 1,190백만원 : '19.10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동의안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을 포괄하는 개념임.

무장애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차이점

구분	무장애 디자인(BF)	유니버설디자인(UD)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만들기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철학이자 접근방법 ·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장애, 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 건축, 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 교육, 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제정)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2006년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0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태생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UN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없는 건축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지 시작 · 90년대 관련 이론이 정립되며 건축을 중심으로 Barrier-Free(무장애) 명명 ·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미국의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간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해 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 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은 BF의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 1997년 North-Carolina 주립대학 Ronald L.Mace가 현재와 같은 정의를 완성하고 원칙을 설정 · 법적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에서의 필요에서 출발 ·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익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 디자인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정의하며,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닌 제품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으로 발전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6)

-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상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진체계를 설정하였음.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

전략 목표	유니버설디자인(UD) 기반 조성 및 확산		
추진 방향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인프라 확립	시민체감도 높은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 우선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시민 인식 제고 및 민간 확산
	<p>공공·민간 영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발전 및 공공사업의 산업 연계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p>	<p>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 관광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 시민체감도 확대 및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확산 도모</p>	<p>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사회 전반의 유니버설디자인 수준 제고 및 민간 적용 확산</p>
추진 체계	서 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증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공공분야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을 위한 증장기 추진 전략 및 종합 실행방안 마련 - 유형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모델 개발 - 공공분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및 컨설팅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등 인식 제고 및 민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세미나, 및 전시 개최 등 시민 인식 제고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서 울 디 자 인 재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산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공감을 통해 배우는 「참여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설치·운영 - 도심 곳곳의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시공 품질 관리 컨설팅 - 서울시 공공영역의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DB화로 지속적 환경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사업의 민간 확대 및 산업 연계 가능 온라인 쌍방향 소통형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또한 동 계획은 2018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하였고,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 3팀 7인으로 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적용과 민간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였음¹⁾.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2018년 5억원의 예산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공 모니터링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효과성 평가, 관광객 이동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개선 등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음²⁾.

그러나 2018년 8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가 서울시 문화본부로 이관되면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소관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고,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을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닌 디자인정책과의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위원회에 시범사업 명목의 예산 편성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요청³⁾하였음.

-
- 1) 2016년 5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최초 시행되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가 아닌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소관이어서 동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을 디자인정책과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2) 서울디자인재단은 2015년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체계 및 활용 방안 연구’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해왔음.
 - 3)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9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닌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예산정책과)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조정실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정관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수년간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음.

하지만 올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사업’으로 편성된 6억원의 예산은 이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연구용역⁴⁾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용되어 예산의 중복 사용을 피할 수 없었으며,

2018년 12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미 수립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17.9)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상위 계획의 변경계획이 필요했으나 절차가 간과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2019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대신에 “유니버설디자인 스마트 유니랩 운영” 사업(1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UD 스마트 유니랩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업무이자 예산편성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10월,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한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업무 역할 구분 및 연계를 보완해달라는 요청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및 사업발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상품, 제품

개발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였음.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서울디자인재단 UD센터 업무 구분

구분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랩(재단)
설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홍보 등 인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공간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정(市政) 사업 위주 (교육 등 일부사업은 민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 위주의 체험공간, 제품개발 등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서울시 주요사업(공공공간, 시설물 등) 사전자문, 인증제 클리닉 및 전시사업, 선도사업 발굴 -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행사 개최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D 라이프스타일 체험·전시 - UD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험/협업 추진 - 기존 산업과 UD 제품·서비스 연계 지원
설치주체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설치근거	<p>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20조</p> <p>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p>※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사업범위</p> <p>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 ('18.6월 신설)</p>

- 2020년 조성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센터장 1인,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등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서울디자인재단 살림터에 조성되어 물리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UD 스마트 유니랩과 연계가 쉬운 장점을 확보하였음. 또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증제 클리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총 11억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임.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칭) 추진방안

- 명 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위 치(안)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내에 설치
 - 2020년 DDP에 설치 예정인 'UD 스마트 유니랩'과의 공간 및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실행력 확보
- 운영방식 :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단체(법인) 선정
 - 공개경쟁 공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단체 선정
 -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센터 운영 추진

※ 서울시 - 디자인재단 - 센터의 역할 구분(안)

분야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정책수립 및 제도구축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관련사업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인증 및 컨설팅	·인증평가제도 운영 ·컨설팅 기반마련		·사전자문, 모니터링 ·인증평가제도 운영 지원 ·도시, 건축, 제품 등 컨설팅 확대
교육 및 홍보	·행사 및 포럼 개최	·유니랩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 및 포럼 개최 지원	·교육 및 홍보, 대내외 인식확산 ·행사 및 포럼 개최 지원

○ 주요 기능 및 역할

- 모니터링 및 평가 : UD 현황 및 실태조사, UD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시 주요사업 사전자문, UD 선도사업 발굴
- 교육 및 홍보 : UD 교육 및 홍보, UD 행사 지원, UD 아카이브 구축 운영 등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민간위탁은 서울시가 아닌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사업의 주관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던 바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에 대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특히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서울디자인재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간 업무 영역에 대해 변동이 없도록 디자인정책과의 업무 조정 능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적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서울디자인재단이 고유 사업화하여 관련된 업무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심사 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에 의거 '20.4월 조성 예정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사업개요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운영인력	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DDP 내 (2020년 DDP에 설치예정인 'UD 스마트 유니랩'과의 공간 및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 실행력 확보)	67㎡	5명	2020.4월 ~ 2023.3월 (3년)

- 위탁기간 : 3년(2020. 4. ~ 2023. 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1,190백만원
 - 사업비 900백만원, 운영비·인건비 290백만원
 - ※ '19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준비 시범사업' 추진(600백만원)

다. 주요 위탁사무

-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 UD 현황 및 실태조사
 - UD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서울시 주요사업(공공공간, 시설물 등) 사전자문
 - UD 인증제클리닉 및 전시사업
 - UD 도시구현 관련 선도사업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
 - UD 교육 및 홍보 전시
 - UD 국내외 행사 개최 지원
 - UD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효과
 - 기 운영중인 민간조직의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인력 추가채용 및 인건비 별도 확보 등 사업추진상 행정·재정적 부담 절감 가능

-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민간확산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비효율 우려가 있는 직영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나. 예산조치 : 1,190백만원('20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합의 완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18.10.2.
- '20년 예산(안) 1,190백만원 : '19.10월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함영우 (☎ 2133-2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을 제거(높낮이차가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3. 장애인화장실의 최소면적은 4㎡이상으로 한다.
 4. 보도의 횡경사는 1/24이하로 한다.
 5. 보도의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① 가이드라인은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의 적극 참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3.28.>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8.3.22., 2019.5.1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3.22.>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 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717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